

“함께 하는 건설, 따뜻한 세상”



## 대한건설협회

수신자 외국인력 고용업체 대표이사

제목 2024년도 2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안내

---

1. 고용노동부 ‘2024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 요령 시달 (외국인력담당관-1229, 2024.4.2.)와 관련입니다.

2. ‘2024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문’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, 외국인력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**고용허가서 신청서를 ‘24.4.22(월)~5.3(금)까지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** 하시기 바랍니다.(붙임 2 참조)

※ **내국인 구인노력**은 **현장별로** 사전에 **7일간\*** 하셔야 고용허가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(붙임 4 참조)

\*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 : (개정 전) **14일간** → (개정 후) **7일간**(시행 : ‘24.1.10, 붙임 4-2 참조)

※ 건설업에 배정된 쿼터 : 2,056명

※ 선택할 수 있는 국가 확대(6개국 → **10개국**), 시행일 : ‘24.3.29, 붙임 1-4 참조

업종	기존 국가	추가 지정 국가
건설업 (10개국)	미얀마, 베트남, 스리랑카, 중국, 캄보디아, 태국	몽골, 방글라데시, 우즈베키스탄, 파키스탄

3. 또한, 귀사에서 현장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실 고용허가서 신청 **첨부서류**와 우리 협회에 제출하실 사증발급 업무대행 신청 **첨부서류**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원수급인과 협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고용허가서 신청시 첨부서류 (현장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용)	1달 후(고용허가서 발급받은 후) 시증발급 업무대행 신청시 첨부서류 (대한건설협회에 제출용)
원수급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원도급 계약서 사본 1부. (공동도급의 경우 지분율이 표기 되어야 함, 별도표기 없으면 공 동수급협정서 첨부)</li> <li>※ 필요사유 : 고용센터에서 현장별 고용가능인력 (원도급 계약금액 × 0.8 이내) 확인용</li> <li>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</li> <li>○ 외국인력현황표 사본 1부.</li> </u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좌 동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+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.</li> </ul>
하수급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.</li> <li>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</li> <li>○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.</li> <li>○ 건설업등록증 사본</li> <li>○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</li> </u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좌 동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+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</li> </ul>

※ 세부내용 : 붙임3-1 참조

- 붙 임 : 1-1. 2024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및 행정사항 안내 1부.  
 1-2. 고용노동부 공문(2024년도 2회차 신규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요령  
 시달) 1부.  
 1-3 붙임(2024년도 2회차 신규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요령 시달)  
 2.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1부.  
 2-1.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중 사업장명 기재방법 안내 1부.  
 3-1. 업무대행(가상계좌발급)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(신규) 1부.  
 3-2. 업무대행(가상계좌발급)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(재입국 특례) 1부.  
 4. 구인신청노력 관련자료 1부.  
 4-1. 현장별 구인신청노력 샘플 1부.  
 4-2 구인신청노력 기간단축(14일→7일) 관련 고용노동부 공문 1부.  
 5. EPS상 고용허가서 신청시 근로자 선택방법 변경 안내'(기존)센터알선 →  
 사업주알선) 1부.  
 6. 사용자교육 의무화 안내자료(기 안내한 사항과 동일) 1부.  
 7. 고용제한처분관련 주요위반사례 1부.  
 8. 고용노동부 공문(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(E-9·H-2) 숙소 등 주거  
 환경 관련 업무협조 요청)1부.  
 8-1 붙임(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규정 안내) 1부. 끝

# 대한건설협회



수신자

부장 유승식 팀장 2024.04.03  
조장환

협조자

시행 외국인력고용지원팀-59 ( 2024.04.03. ) 접수

우 060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, 7층(건설회관) / <http://www.cak.or.kr>

전화 /전송 02-518-9963 / [sik6199@cak.or.kr](mailto:sik6199@cak.or.kr) / 공개